

우송대학교 교수회 규정

제 정 2009. 03.
개 정 2016. 02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15장 제63조 및 제64에 의거하여 우송대학교 교수회(이하 “교수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조직 및 기능과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교수회의 회원은 우송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교수회에는 대학평의위원회 교수대표를 추천하기 위한 대학평의위원회 교수대표 추천위원회와 교수의 복리 증진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교수복리증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각 소위원회 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제2항에서 정한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교수회에서 선출하며,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제3조(신의성실) ①교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교수회는 대학발전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지며, 교수회 회원은 교수회 활동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 2 장 전체 교수회

제4조(구성) 교수회는 교수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기능)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우송대학교 학칙 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. 다만,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학칙개정 및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개정은 제외할 수 있다.
2. 교수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
3. 교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에 관한 사항
4.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5. 내·외국인 교수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6.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
7. 총장이 부의하는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6조 (교수회의 개최) ①교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국인 교원은 정확한 의사소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임시회는 의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, 사전에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④소집통지는 서면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.

제7조(교수회의 성립 및 의결) ①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제1항의 전체 회원이란 재직회원 중 파견, 휴직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수를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.

③교수회가 성립 후 회의 계속 중 실제 출석회원이 전체회원수의 4분의 1 미만이 되면 자동 유회(流會)된다.

④이 규정 공포 후 최초로 개최하는 회의 소집은 20인 이상 회원의 동의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의장 선출) 의장 선출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 의장과 소위원장 및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재 정

제10조 (재정) ①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본교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②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4 장 규정의 개정 및 회의록

제11조 (개정) ①교수회 규정의 개정은 전체 회원의 40%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발의로 제안된다.

②개정안의 의결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③제7조제1항 및 전항의 경우에 위임장은 전체회원수의 20%를 초과하지 못한다.

④제7조제2항(전체회원의 정의), 제3항(자동유회 규정)은 본조 제2항에 준용한다.

제12조 (회의록)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정하는 2인이 서명하고 공개한다.

제13조 (세칙의 제정)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